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달걀과 천연꿀

김용태 | 관세법인 탑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FTA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달걀과 천연꿀



김용태

관세법인 탐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계란이라고도 하는 달걀은 그 겉이 단단한 껍데기 (난각)에 싸여 있고, 그 안에는 2층의 속껍질이 있다.¹⁾ 겉껍데기에는 작은 구멍이 많아서 그 구멍을 통하여 호흡을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증발하고, 미생물이 침투하여 내용물이 빨리 썩게 된다. 2층으로 된 속껍질 사이의 한쪽에는 공기집이 있는데, 이 공기집은 갓 낳은 달걀일 때는 작았다가 시간이 지나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 차차 커진다.

달걀은 영양을 고루 갖춘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은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흰자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근래에는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하여 먹기를 꺼리지만 노른자에는 비타민 A·D·E·B2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개 정도는 먹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 단지 무기질 중에 인이 칼슘보다 많이 들어 있는 강한 산성 식품이고 비타민 C가 없는 것이 영양상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



꿀에는 벌꿀(천연꿀)과 당밀(인조꿀)²⁾이 있다. 벌꿀은 오랜 옛날에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그리스 제신(諸神)들의 식량이었다고 하며, 로마인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한다. 그 후 인류사회에서 꿀을 약용으로 하는 한편 사체(死體)의 방부제, 미라 제작, 과실의 보존 등에 사용하여 왔다.³⁾

달걀과 천연꿀은 관세율표상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제04류(세번 제0401호부터 제0410호까지)에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에서 달걀과 천연꿀이 분류되는 해당 품목번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품목번호	품명(Description)	분류조건·범위
0407	새의 알	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	껍질이 붙지 않은 것
	알의 노른자위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1) 속껍질 안에는 흰자위(난백)이 있고 겉껍데기와 노른자위(난황) 주위에는 묽은 흰자위가 있으며 그 중간에는 된 흰자위가 있다. 노른자위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쪽 끝이 알끈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 구성 물질의 비율은 껍데기 11%, 흰자위 58%, 노른자위 31%이다. 달걀은 평균 중량은 48~60g 정도이며, 중량에 따라 소란(43g 이하)·중란(44~51g)·대란(52~59g)·특란(60~67g)·왕란(68g 이상)으로 나뉜다.
- 2) 당밀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정제당밀(精製糖蜜)과 얼음사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얼음당밀이 있다. 이 당밀은 담황색의 투명한 점조액(粘稠液)이며 보통 수분 20~30%, 당분 60~70%, 회분(灰分) 5~10%, 유기 비당분 2~3%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이 당액은 알코올·과자·잼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 3)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벌꿀을 채집하여 귀한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야생벌의 수효가 격감됨에 따라 꿀이 매우 귀해진 반면에 인공적으로 벌을 길러 꿀을 채집하는 양봉업이 발달되어 이른봄~늦가을까지, 남쪽은 제주도에서 북쪽은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벌통을 차에 싣고 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꿀을 생산하는데, 이 꿀은 야생벌의 꿀보다 당분과 질이 떨어진다.

1. 달걀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CC기준인 품목번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한-미 FTA PSR은 달걀의 생산에 이용한 비원산지 물품이 소호 제1901.90호⁴⁾와 제2106.90호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걀과 같은 낙농품이 조제식품으로 변경하여 쿼터를 회피하려는 우회무역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원산지 달걀을 수입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깨뜨려 획득된 흰자나 노른자 또는 이를 삶거나 말려서 가공된 계란제품도 품목번호 2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정적으로 달걀은 닭이 알을 낳아 생산되기 때문에 제4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부터 달걀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미 FTA에서 달걀은 사실상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국이나 아세안 각 회원국(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PSR은 달걀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달걀만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에서 완전생산된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국이 아닌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출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터키 FTA에서도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달걀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한국이나 터키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이어야

4) 관세율표상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5) 관세율표상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

한다. 그러므로 한-터키 FTA PSR은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달걀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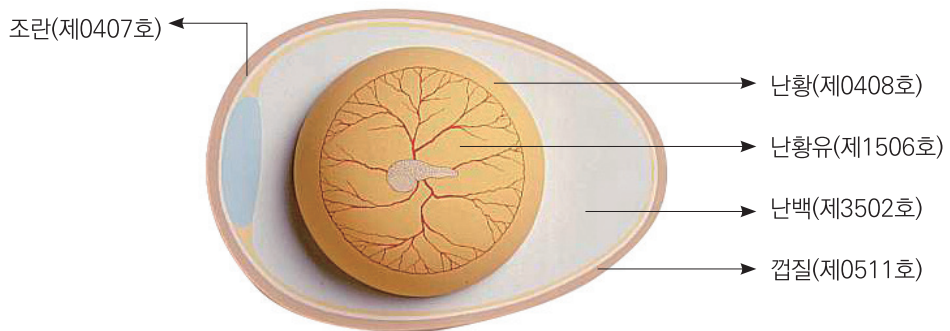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407호와 제0408호에는 조란(새의 알)이 분류될 수 있는데, 세번 제0407호에는 그 형체가 껍질이 붙은 것에 한하여 분류될 수 있고, 그 저장상태가 신선하지 않거나 보존처리 또는 조리한 상태를 벗어난 조란은 분류될 수 없다.

껍질이 붙지 아니한 조란(새의 알)과 바로 앞에서 설명한 세번 제0407호에 분류될 수 없는 저장

상태의 조란(새의 알)은 세번 제04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세번 제0408호에는 난황도 분류될 수 있는데, 난황의 저장상태가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보존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난황은 세번 제0408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난황의 저장상태에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는 세번 제0408호의 분류 범위에서 배제되는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난황(egg yolks)은 알의 노른자위로서 알의 세포질 안에 있는 영양물질로 단백질, 지질, 당류, 비타민, 무기 염류 따위를 함유하고 있다. 조란의 구성성분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조란의 구성성분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한편, 오리알(Duck Egg, cooked)을 껍질이 있는 체로 삶아 간장에 넣어 맛을 낸 후 진흙에 싸는 것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관세당국은 분류대상

물품을 조리한 오리알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7호를 근거로 HSK 제0407.0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⁶⁾

6) 관세청 감정22701-1608, 1989.05.31.

2. 천연꿀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CC기준인 품목번호 2단위 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한-미 FTA PSR은 천연꿀의 생산에 이용한 비원산지 물품이 소호 제1901.90호와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걀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낙농품이 조제식품으로 변경하여 쿼터를 회피하려는 우회무역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꿀은 꿀벌이 꽃에서 빨아들여 벌집 속에 모아 두는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를 채취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제4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부터 천연꿀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미 FTA에서 천연꿀은 사실상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호주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호주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다만, 한-호주 FTA PSR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의 적용범위에서 한-미 FTA PSR과 같이 소호 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에서 천연꿀은 역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캐나다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미 FTA 및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캐나다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비록 한-캐나다 FTA PSR에는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소호가 없지만 한-캐나다 FTA에서도 천연꿀은 역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될 수 있다. 천연꿀에 인조꿀을 섞어 혼합한 꿀은 이미 천연꿀의 개념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세번 제1702호의 용어에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세번 제0410호에서도 분류될 수 없으며, 천연꿀을 가공한 ‘꿀 조제품’도 조제식품의 특정세번인 제2106호에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번 제0410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한편, 제04류의 맨 마지막에 설정된 세번 제0410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이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의 잔여호(residual heading)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연꿀 상품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만일 천연꿀과 녹용추출물 분말을 혼합한 조제품(Blend of honey and deer velvet powder)인 경우 그 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제0409.0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⁷⁾

이와 같은 쟁점이 제기된 품목분류 사례⁸⁾에서 쟁점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제0409.0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찬반 논거는 이렇다.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이 첨가되어 맛과 냄새 및 색깔 등이 천연꿀과는 다른 꿀 조제품으로서 천연꿀의 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 및 용도면에서도 천연꿀과는 상이한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천연꿀은 1Kg당 US \$2.95이나, 쟁점물품은 1Kg당 US \$15.13로서 천연꿀보다 약 7배나 고가이고, 첨가물인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 1k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건조녹용 15.42Kg이 소요되며, 성분별 가격비가 녹용추출물이 66.1%, 천연꿀이 19.3%이나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잘못 해석하여 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을 천연꿀의 중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HS 제2106호에 분류하고, 천연꿀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HS 제0409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용도·구성성분·가격비 등을 감안할 때, 녹용분말 2%를 첨가한 꿀 조제품 보다 천연꿀의

7) 유사한 사례로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2(2004.05.10.)호가 있다.

8) 이 사례의 불복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349-○○○호(2003.07.22)의 1건으로 Blend of honey and deer velvet powder(천연꿀과 녹용추출물 분말을 혼합한 조제품)를 HSK 제2106.90-9091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0409.00-0000호(관세율 245.7%)의 천연꿀로 분류하여 2003.08.28.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3.10.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06.26.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2004.06.30. 관세 88,439,830원, 부가가치세 8,843,980원, 가산세 19,456,750원 합계 116,740,560원을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성을 더 상실한 것으로서 HS 제0409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제210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 99%에 녹용 추출물 1%가 첨가되었으나, 맛과 냄새가 천연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제0409.0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재결청인 국세심판소(현재는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⁹⁾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에서는 “각호에 계기된 물질에는 당해물질과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3 나에서는 “혼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없어 관세청은 천연꿀에 첨가된 물질의 함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천연꿀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2106호로 분류 결정(관세청 품목분류과 47281-306, 2003.04.09.외)하였고, 첨가물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천연꿀로 보아 HS 제0409호로 분류결정(중앙분석소 47260-7200, 2001.11.16.외)하고 있어 천연꿀 관련물품은 첨가물질의 함량 2%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4부의 조제식료품(Prepared Foodstuffs)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농·축·수산물물 같은 표 제1부(동물성 생산물) 및 제2부(식물성의 생산물)에서 규정하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또는 일시저장처리 등의 가공정도를 초과하여 가공한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분말 1%를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가공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천연꿀의 조제품(Preparation)이 아닌 혼합물(Mixtures)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호 및 같은 통칙 3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점물품을 같은 호에 품목분류한 통관지세관장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쟁점과 유사한 최근의 관세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꿀(99.01%) 주성분에 홍삼농축액(0.99%)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상품(내용량 1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10857, 2017.

9) 국심2004관0185, 2006.02.23.



10.26.], ② 천연꿀 주성분(99%)에 소량의 계피파우더(1%)를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6538, 2017. 05.25.], ③ 꿀 주성분에 로열젤리(5% 미만)가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5918, 2013.08.09.], ④ 천연꿀에 체리(8%)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체리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는 상품(내용량 2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80, 2013.06.21.], ⑤ 천연꿀에 산딸기(5.9%)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산딸기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는 상품(내용량 2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79, 2013. 06.21.], ⑥ 천연꿀 주성분(99.49%)에 소량의 생강엑스(0.51%)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09, 2013.06.19.], ⑦ 천연꿀 주성분(99.4%)에 소량의 강황엑스(0.55%), 생강엑스(0.05%)을 첨가한 담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259, 2013.06.18.] 등의 품목분류에서 관세당국은 해당 정점물품들 모두가 천연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등을 이유로 관세율표상 HSK 제0409.00-0000호로 판정하고 있다.

FTA TRADE REPORT

